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 비용 지급규칙 [2025. 7. 1. 규칙 제412호]

일부개정 2026. 6. 11. 규칙 제 42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외부전문가 활용 비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연구업무 회의에 참석한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2. 초청강연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각종 행사의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②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별도의 검토, 자문,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방법) 외부전문가 활용 비용 지급은 매 회의 개최시마다 지급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액) ①외부전문가 활용 비용 지급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석자의 사회적 저명도, 행사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10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의 지급기준 및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11.)

③제2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연구원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급된 수당은 이 규칙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6.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 문 료 등 외 부 전 문 가 활 용 비 용 지 급 기 준

(단위 : 원)

구	분	수 당 액
1. 각종 연구업무회의에 초청된 원외전문가회의		
가. (온라인) 참석수당		300,000원
나. 서면 자문수당		200,000원
2. 초청 강사료(시간당)		300,000원
3. 각종 행사 보상금		
가. 기조연설자		500,000원
나. 사회자		400,000원
다. 발표자		500,000원
라. 토론자		300,000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